

# 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     보
http://www.daedeok.go.kr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**제2026-26호**  
**2026. 5. 22.(금)**

## 차      례

<b>고      시(1)</b>
--------------------

-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부여 고시(고시 제2026-40호) ..... 1

<b>공      고(6)</b>
--------------------

- 농업생산기반시설(구거)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(공고 제2026-613호) ..... 2
- 협의공고(공시송달)(공고 제2026-614호) ..... 3
-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(공고 제2026-624호) ..... 5
-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(공고 제2026-625호) ..... 6
-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(공고 제2026-626호) ..... 7
-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(공고 제2026-629호) ..... 8

공 략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#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부여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22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#### ○ 도로명주소 부여

지 번 주 소	도 로 명 주 소	건물번호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	
			사 유	고시일
대화동 13-5	대전로 1260	건물신축	대전시의 주요도로	2009. 07. 10.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(☎042-608-5305)로 문의 또는 [도로명주소\(누리집\) \(juso.go.kr\)](http://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◆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 농업생산기반시설(구거)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815번지(구거) 내 『국유재산법』 제30조 및 『농어촌정비법』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한 행위자에 대하여 『국유재산법』 제38조 및 『농어촌정비법』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,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

2026년 5월 22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공 고 명: 농업생산기반시설(구거)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6. 5. 22. ~ 2026. 6. 5.
3. 공고장소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법적근거: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 및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8조
5. 공시송달 내역

연 번	소재지	행위자	주소	점유내용	점유면적(m <sup>2</sup> )	비 고
1	장동 815	미상	미상	가설건축물	4	

6. 원상회복기한: 2026. 6. 26. 까지
7. 공고내용
  -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,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관련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,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-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.
8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자원농생명과(☎042-608-6942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## 협의공고(공시송달)

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“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도로사업”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,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·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2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#### 1. 사업의 개요

- 사업 명: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도로사업
- 사업 위 치: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, 읍내동 일원
- 사업시행자: 대전광역시
- 보상업무위탁(수행)기관: 한국부동산원

#### 2. 협의기간 ·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

- 협의기간: 본 공고 만료일부터 30일간(단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- 협의장소: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, 대전사학연금회관 6층 한국부동산원
- 협의방법: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,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,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.

#### 3. 보상시기 · 방법 및 절차

- 시 기: 협의 요청 → 협의 성립(계약체결) → 소유권이전등기 → 보상금 지급
- 방 법: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(또는 행정소송)

○ 절 차: 보상금 지급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지급됩니다.

○ 기 타: 소유자 확인 후 보상액과 주의사항 등을 개별 통지합니다.

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먼저 말소(해지)한 후 계약 가능합니다.

관계인께서는 필요시 소유자의 보상금에 채권보전(제3채무자: 대전광역시)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4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

○ 인감증명서(일반용) 1부, 인감증명서(부동산매도용 ※ 매수자 인적사항 : 대전광역시

주소 :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(등록번호 : 425)

○ 주민등록초본 2부(주소변경내역 표시)

○ 국세·지방세·관세 납세증명서 각 1부

○ 예금통장, 신분증, 인감도장 지참

#### 5. 협의공고(공시송달) 대상

○ 붙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

※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공고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, 보상금액 등은 마킹(\*)처리 하며 소유자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(토지)를 발급하거나 신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추고 협의 장소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유선으로 보상금액이나 마킹된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는 공개하지 않음)

##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(식품위생교육)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(폐문부재 등)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5월 22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공고기간: 2026. 5. 22. ~ 2026. 6. 8.(14일간)
2. 근거법규: 「식품위생법」제41조 및 같은 법 제101조(과태료)
3. 공고내용

업종	업소명	위반자명	소재지 주소	위반사항	처분 내용
일 반 음식점	다잇썸	한*슬	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39, 1동 1층 (덕암동)	2025년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	과태료 부과 사전납부 80,000원

#### 4. 고지사항

- 가.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전 대덕구청 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  
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(가상계좌 납부 가능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상기 위반사실에 대하여 『식품위생법』제101조제2항제1호에의거 과태료 80,000원  
을 부과하오니 2026. 6. 8.까지 납입고지서를 참고하시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 
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 
됩니다.

5. 본 처분에 대한 문의: 대전 대덕구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☎(042)608-6902. 끝.

##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(식품위생교육)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(폐문부재 등)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5월 22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공고기간: 2026. 5. 22. ~ 2026. 6. 8.(14일간)
2. 근거법규: 「식품위생법」제41조 및 같은 법 제101조(과태료)
3. 공고내용

업종	업소명	위반자명	소재지 주소	위반사항	처분 내용
일 반 음식점	맛나식당	최*희	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29번길 46, 1층 (중리동)	2025년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(2차)	과태료 부과 사전납부 320,000원

#### 4. 고지사항

- 가.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전 대덕구청 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  
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(가상계좌 납부 가능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상기 위반사실에 대하여 『식품위생법』제101조제2항제1호에의거 과태료 320,000  
원을 부과하오니 2026. 6. 8.까지 납입고지서를 참고하시어 금융기관에 납부하  
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 
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 
됩니다.

5. 본 처분에 대한 문의: 대전 대덕구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☎(042)608-6902. 끝.

##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(식품위생교육)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(폐문부재 등)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5월 22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공고기간: 2026. 5. 22. ~ 2026. 6. 8.(14일간)
2. 근거법규: 「식품위생법」제41조 및 같은 법 제101조(과태료)
3. 공고내용

업종	업소명	위반자명	소재지 주소	위반사항	처분 내용
일 반 음식점	솔라식당	정*미	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4번 길 21-12, 1층 (송촌동)	2025년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 이수(2차)	과태료 부 과 사 전 납부 320,000원

#### 4. 고지사항

- 가.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전 대덕구청 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  
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(가상계좌 납부 가능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상기 위반사실에 대하여 『식품위생법』제101조제2항제1호에의거 과태료 320,000  
원을 부과하오니 2026. 6. 8.까지 납입고지서를 참고하시어 금융기관에 납부하  
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 
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 
됩니다.

5. 본 처분에 대한 문의: 대전 대덕구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☎(042)608-6902. 끝.

##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-59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,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(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2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제 목: 건축법 상 도로지정 공고
2. 지정근거: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
3. 공고기간: 2026. 5. 22. ~ 2026. 6. 12.(22일간)
4. 공고대상

소재지	지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지목	소유자		이 관 계 인 동 의 여 부
				주 소	성 명	
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63-67	2,460	2,460	도로	주소생략	신화**** 외 13	동의

5. 공고방법 : 대덕구청 고시공고 게시판
6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대덕구청 주  
택경관과로 의견(서면)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주  
택경관과 건축허가팀(☎042-608-515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